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Children's Righ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이 철 호

남부대학교

Lee cheol-ho

Nambu Univ.

요약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 서론

2013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은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所有物)'이라는 인식 아래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제3자가 아동 폭력이나 학대를 목격하고 문제제기나 개입하는 경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 는 등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II. 아동 학대의 실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2013년 아동학대 건수는 총 13,076건으로 하루 평균 3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0년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10,94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10,85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

(39.3%), 여아가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0~15세의 아동이 2,906건(42.8%)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5,564건(81.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주요 장소로 복지시설(394건, 5.8%), 어린이 집(232건, 3.4%)의 순이었다. 가정형태별로는 친부모가 족이 38.0%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20.0%, 모자가정 14.4%, 재혼가정 7.0%, 친·인척에 의해 보호됐던 아동은 3.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 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가정 모두 아동학대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친부모가족의 경우 9.9%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자가정·모자가정, 미혼부·미혼모가정 등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율(36.7%)을 차지해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건수의 8.7%에 해당하는 총 591건을 기록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 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129건, 경남 58건, 울산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총 5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으로, 해당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사망 아동의 학대유형은 '방임'과 '중복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의 경우 2009년 50.0%,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0%, 2013년 54.5%였다.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에서 2012년 50%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13.6% 수준으로 파악됐다[1].

Ⅲ.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

1.1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1.2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는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했고,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그러나 동법 시행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하다(동법 제4조 참조).

1.3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1.4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되고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는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동법 제10조),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63조 참조).

1.5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동법 제12조),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13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하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1.6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4호 및 제23조).

1.7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조 이하). 보호처분의 내용에는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있다.

1.8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번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되었다(동법 제49조).

2.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2.1 아동학대처벌법은 제47조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제52조에서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의 법적 성격이 불고 불리 원칙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 형사 제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일치가 법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현재의 가정법원 구조와 인력 현황 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2]

2.2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적 대응이 행위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동학대의 배경에 학대행위자의 심리적·병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벌적 대응보다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 관한 의료적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종래 강조되어온 것이 이른바 '치료사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점에서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지향하고 있는 치료사법이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3]

■ 참고 문헌 ■

- [1] 인재근 의원실 보도자료(2014년 8월 19일) 참조
- [2]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 제24권 제2호, pp.220, 2014
- [3] 김성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한양대 법학연구소), 제31권 제1호, pp.34, 2014